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승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2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6.

발 의 자:최승재·배준영·정진석

김정재 · 엄태영 · 한무경

송석준·박덕흠·김희곤

김태흠 · 구자근 · 이철규

김희국 · 김기현 · 이종배

김성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·중소기업 등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출원인들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어 현행 「특허법」과 같이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재심 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더불어 현재 「특허법」은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특허

출원의 보정이 가능하여 보정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 동안 여러 번 보정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(안 제55조).
- 나.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5 조의2 신설).
- 다. 재심사의 청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 정을 둠(안 제193조의2 신설).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55조제1항·제3항"을 "제55조제1항· 제4항"으로 한다.

1.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: 재심사의 청구기간까지

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: 재심사의 청구기 간

제5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지정상품 일부에만 있는 경우에는 부분거절의 취지를 명시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재심사의 청구)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(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 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 이

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.
-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"을 "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"를 "상표등록출원 의 지정상품에 대하여"로 한다.
- 제68조 중 "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"을 "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"으로 한다.

제8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55조제3항에 따라 거절이유가 지정상품 일부에만 있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이 설정등록되고,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절차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었던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 해당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설정등록되는 경우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먼저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.

다만, 제2항에 의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먼저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 중 "제83조제2항"을 "제83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거절이유통지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88조제2항 중 "제57조부터 제70조까지"를 "제55조의2,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, 제83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185조제2항 중 "제40조제2항제4호"를 "제40조제1항제1호·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"로 한다.

제190조제2항 중 "제55조제3항"을 "제55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191조 중 "경우에는"을 각각 "지정상품에 대하여는"으로 한다.

제193조제1항 중 "경우에는"을 각각 "지정상품에 대하여는"으로 한다.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3조의2(재심사 청구의 특례)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거절이유통지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제212조 중 "제68조부터 제70조까지"를 "제55조의2,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, 제83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)	제40조(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)
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	①
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	
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	
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	
원서의 기재사항, 상표등록출원	
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	
보정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
	<u>청구하는 경우: 재심사의 청</u>
	<u>구기간까지</u>
<u>1.</u> (생 략)	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· 3. (생 략)	2. •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	4
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	
준용되는 경우: <u>제55조제1항</u>	: 제55조제1항
<u>• 제3항</u> 또는 제87조제2항 •	<u>• 제4항</u>
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	
간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1조(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)	제41조(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)
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	①
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	

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있다.

1.·2. (생략) <신설>

3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55조(거절이유통지) ① · ② (생략)

<u><신 설></u>

③ (생 략) <신 설>

 	 	_
 	 	_
 	 	_
 	 	_
 	 	_
 	 	_
 	 	_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 를 청구하는 경우: 재심사의 청구기간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거절이유통지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
③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지정 상품 일부에만 있는 경우에는 부분거절의 취지를 명시한 거 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55조의2(재심사의 청구) ① 제5 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(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

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 장된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 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 만.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 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 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 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재심사의 청구절차 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 구는 취하할 수 없다.

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 -----거절이유를 발견할 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

제57조(출원공고) ① 심사관은 상 제57조(출원공고) ① -----

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 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 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 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
- ②·③ (생 략)
- 제68조(상표등록결정) 심사관은 제6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<u>거절이</u>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.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83조(상표권의 존속기간) ① 제83조(상표권의 존속기간) ① (생 략)

<신 설>

 1. (현행과 같음) 2
<u>상</u> 표등록출원
의 지정상품에 대하여
②·③ (현행과 같음)
68조(상표등록결정)

- ----- 거절이유를 발견할 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| 수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
 - (현행과 같음)
 - ② 제55조제3항에 따라 거절이 유가 지정상품 일부에만 있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나 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 이 설정등록되고,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있은 후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 권이 소멸한다. <단서 신설>

1. ~ 3. (생략)

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

그 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절 차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었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거 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 이 설정등록되는 경우 그 상표 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나머 지 지정상품에 대해 먼저 설정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 료일로 한다.
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----. <u>다</u>만, 제2 항에 의해 설정등록된 경우에 는 먼저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) ① 제84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) ①

제83조제3항-----

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87조(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 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① (생 략)

- 1. ~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<신 설>

- 차 등에 관한 준용) ① (생 략)
 -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 하여는 제37조, 제38조제1항,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, 제46 조, 제47조, 제50조, 제53조, 제 57조부터 제70조까지, 제128조,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, 제144조, 「민사소송 법」 제143조, 제299조 및 제36 7조를 준용한다.
- 략)

제87조(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 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① (현 행과 같음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④ 거절이유통지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.

제88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 제88조(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 차 등에 관한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

(<u>2</u>) -----

\circ	
제55조의2, 제57조부터	제70조
까지, 제83조제2항,	

제185조(보정의 특례) ① (생 제185조(보정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는 <u>제40조제2항제4호</u>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.
- 제190조(거절이유 통지의 특례) ① (생 략)
 -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는 <u>제55조제3항</u>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.
 - 제191조(출원공고의 특례) 국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"거절이유를 발견 할 수 없는 <u>경우에는</u>"은 "산업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에는"으로 본다.
- 제193조(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) ① 국제상 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"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"은 "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"으로 본다.

②
<u>제40조제1항제1호·제2항제4</u>
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
제190조(거절이유 통지의 특례)
① (현행과 같음)
②
제55조제4항
· 제191조(출원공고의 특례)
<u>지정상품에 대하여</u>
는 <u>는</u>
<u>지정상품에 대하여는</u>
제193조(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
의한 보정의 특례) ①
<u>지정상품에 대하여</u>
<u>는</u>
<u>지정상품에 대하여</u>

② (생략)

<신 설>

① (생 략)

1. ~ 5. (생 략)

② • ③ (생 략)

<신 설>

제212조(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)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제3항, 제42조, 제50조, 제68조부터 제 70조까지, 제134조제1호부터 제 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.

는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3조의2(재심사 청구의 특례)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.

제210조(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 제210조(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 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) 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• ③ (생 략)

④ 거절이유통지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.

∥212조(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
관한 준용)
<u>제55</u> 조의2, 제68
조부터 제70조까지, 제83조제2
<u>하</u>